

- ⑪(고양시민회 신기철 사무국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가혹행위, 국가기관에 의한 폭력, 경찰 군대 등 조직 내 폭력, 가정 내 폭력, 직장 내 성희롱
-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국가수사기관(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에 의한 편파적인 수사 등
- ⑮(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철호 대외협력실장/ 정송기 교권법규국장)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서 오는 인권침해
- ⑰(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 신체의 자유 침해가 가장 많을 것이고, 노동권, 복지권 침해도 많을 것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표현의 자유 침해도 상당수 예상된다.
- ⑱(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평화의집 김주철 소장) 상담소실 무자로서 10년 겪은 것은 가난한 이들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행중인 사람과 상대방의 인맥, 학맥, 매수 등으로 인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판단과 수사 및 결정 “무식한 말로 줄이 없는 경우
- ㉑(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 노동탄압, 경찰의 과잉진압, 여성폭력, 정신병자 수용시설의 폭력, 군대폭력 등
- ㉓(나와우리 김현아 대표) 국가폭력과 차별(인종 및 타자에 대한)
- ㉕(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송지혜 간사) 수사과정에서 비인간적 행위
- ㉗(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조만희 간사) 근로자와 상관의 관계
- ㉙(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저소득층의 서민들이 발생하는 문제
- ㉛(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및 사인간의 기업내 성별, 혈연, 학연 등에 의한 차별
- ㉝(남북나눔운동 김경민 교육국장) 공권력에 의한 침해
- ㉟(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김삼열 회장)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문제
- ㊱(민가협 '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이상희 변호사) 폭력, 부당한 징계(제재), 직무유기, 제도에 의한 차별(행형법 상 의료,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
- ㊳(민가협 '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오민) 직권남용, 부당한 공권력 행사, 직무불성실, 부조리
- ㊵(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묵 간사) 성차별적 인권 침해
- ㊷(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미디어에 의한 인권침해

- ㉓(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준석 간사) 차별행위
- ㉔(동아일보 정현상 기자) 물리적 폭력 및 언어·성 폭행
- ㉕(동아일보 신동아 육성철 기자) 인권침해 여부 자체를 가리는 사안이 많을 것
- ㉖(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해결학 박사과정 강연진) 구금시설 및 군대 등에서의 일상적인 인권침해

4-3-2 진정대상 국가기관

4-3-2 위원회에 제기되는 인권침해 진정들은 주로 어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응답자 수 : 28인(59.6%)

응답빈도

1순위 : 경찰·검찰(20)

2순위 : 교도소·구치소(9)

3순위 : 법무부(7)

4순위 : 국정원/ 국방부·군당국(6)

5순위 : 행자부/ 노동부(4)

6순위 : 법원(3)

7순위: 정보통신부/ 구청등 지방자치단체(2)

기타 : 여성부/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수용소

응답의견 :

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경찰, 검찰, 노동부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여성부, 노동부, 법무부

④(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검찰청 등

- ⑤(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박신용철 조직교육부장) 국정원, 검찰, 경찰, 군당국
- 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 법무부, 행자부, 국방부
-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로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에 집중될 것임 - 위원회가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각종의 수용기관을 관리하는 관청이 그 대상이 될 것임.
-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법원
- ⑪(고양시민회 신기철 사무국장)검찰, 경찰
-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대부분 그럴 것이다
- ⑮(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철호 대외협력실장/정송기 교권법규국장(공동작성)) 경찰, 검찰
- ⑯(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경찰, 군, 국정원 등 국가기관, 정보기관 / 교도소 등 시설
- ⑰ (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검찰과 경찰 그리고 교도소, 수용소 및 법원
- ⑲(김상진기념사업회 국승용 사무국장) 경찰, 검찰, 법무부, 국정원, 국방부, 정보통신부
- ㉑(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경찰청, 국방부, 노동부
- ㉒(열린사회시민연합 이종철 간사) 교도소, 국가정보기관
- ㉓(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행정, 사법, 입법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
- ㉕(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법원, 경찰 등의 물리적 공권력을 발하는 기관
- ㉖(남북나눔운동 김경민 교육국장) 경찰, 검찰 등
- ㉗(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김삼열 회장)노동부
- ㉘(민가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이상희 변호사) 검찰, 경찰, 교도소, 구치소, 국정원
- ㉙(민가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오민) 검찰, 경찰, 교도소, 지방자치단체의 직무태만 및 부조리

- ④(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묵 간사) 경찰
- ②(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정미정 사무처장) 경찰서, 구청
- ③(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준석 간사)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경찰서, 검찰 등 사법기관, 다수인 보호시설 / 일반 공공기관
- ⑤(동아일보 신동아 육성철 기자)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을 것
- ⑥(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해결학 박사과정 강영진) 법무부
- (47)(한국YMCA전국연맹 김기현 부장) 검찰, 경찰, 법무부

4-3-3 진정대상 국가기관의 예상대응태도

<설문4-3-3 > 위원회에 제기되는 인권침해 진정에 대하여 상대방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공무원들은 어떤 태도로 대응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 ①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할 것이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
- ② 형식적으로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 ③ 조사에 가능한 한 응하지 않으려 하되, 조사에 응하는 경우에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 ④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응답>

- 응답자 수 : 33인(70.2%)
- 응답빈도
 - 1순위 : ② (19인)
 - 2순위 : ④ (12인)
 - 3순위 : ③ (2인)

4-3-4 진정대상 국가기관의 협조여부

<설문4-3-4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위원회의 조사에 가장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과 가장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응답>

협조할 것으로 보이는 기관

1순위 : 여성부 / 없음(4인 응답)

2순위 : 지자체 / 경찰(2인 응답)

기타 : 교육기관 / 잘모르겠다. 이 또한 상황에 따를 것이다. / 행자부 /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기관

1순위 : 검찰·경찰(17)

2순위 : 국정원(10)

3순위 : 법무부(9)

4순위 : 국방부·군당국(6)

5순위 : 행자부 / 교도소(2)

기타 : 지자체 / 통일부 / 외교통상부 / 기무사 (1)

4-3-5 진정대상 차별행위의 행위자

<설문 4-3-5> 위원회에 제기될 차별행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어떤 종류의 차별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자 수 : 20인(42.5 %)

응답빈도

1순위 : 성차별(12)

2순위 : 장애인 차별(5)

3순위 : 경제력에 의한 차별 / 학력 / 인종·국적차별(4)

4순위 : 출신지역(2)

기타 : 성적 지향 / 사회적 신분 / 연령(각 1)

□ 응답의견

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편의시설미설치로 인한 이동의 문제, 장애로 인한 노동의 문제; 채용전의 문제가 심각. 자기결정권 무시, 편견으로 인한 기회불평등 등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남녀차별, 인종차별

④(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따돌림, 언론 및 자유의 박탈

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 성, 신체(정상유무), 권력에 의한 차별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 성, 학력, 출신지역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우선은 성별에 의한 차별 일 것이며, 점차(위원회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장애, 학벌, 지역 등에 의한 실질적 차별에 대한 탄원이 많아질 것임.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성차별, 연령차별

⑮(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철호 대외협력실장/정송기 교권법규국장(공동작성)) 경제력에 차이에 의한 평등권 침해

⑯(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사회적 신분, 신체적 조건 등

⑰(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 성차별 문제, 외국인노동자 등 인종차별 문제

⑱(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 평화의 집 김주철 소장) 가진자와 못가진자, 관련기관과 아는자와 모르는자, 배운자와 못배운자

㉔(나와우리 김현아 대표)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성폭력

㉕(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송지혜 간사) 성차별, 범죄전력 차별

㉖(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조만희 간사) 일반시민(대중)과 공무원(정부기관 근

무자)와의 사이

- ㉔(열린사회시민연합 이종철 간사) 교도소 수용실태, 여성문제
- ㉕(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공권력 피해 및 재산권 침해
- ㉖(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성별, 국적을 이유로 국가 및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
- ㉗(민가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이상희 변호사) 경제적인 차별, 성별, 성적지향
- ㉘(민가협'교도서를 걱정하는 모임' 오민)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별 선호
- 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묵 간사) 성적 차별, 교육수준

4-3-6 진정대상 차별행위의 행위자

<설문 4-3-6> 위원회에 제기될 차별행위들은 주로 어떤 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응답>

응답자 수 : 18인(38.3%)

응답빈도

1순위 : 기업(10)

2순위 : 행정기관(8)

3순위 : 수용시설(5)

4순위 : 군대(3)

응답의견

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시설운영자 등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기업체, 향락산업

③(열린사회 서대문, 마포시민회 박운기 정책기획부장)회사, 남편

⑤(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박신용철 조직교육부장)대통령, 국정원, 검찰청장, 행정자

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대기업, 정부조직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고용상의 차별이 가장 많을 것이며, 장애자의 경우에는 장애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각종 시설-특히 교육시설-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기될 것임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교도소

⑪(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철호 대외협력실장/정송기 교권법규국장(공동작성)수사기관

⑫(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 평화의 집 김주철 소장)단체 : 경찰, 검찰, 노동부 등 개인 : 분명치 않음

⑬(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기업체나 수용시설, 경찰, 군대 등

⑭(나와우리 김현아 대표)국가 및 군대

⑮(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송지혜 간사) 국가기관 및 회사

⑯(열린사회시민연합 이종철 간사) 교도소, 공직사회, 군대, 일반직장내의 문제

⑰(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행정기관 및 사법부

⑱(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법무부,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소 및 기업의 고용주

⑳(민가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이상희 변호사) 집단 수용시설 장

㉑(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해결학 박사과정 강영진)고용주(국가나 사기업을 막론하고)

4.4 직원의 1년간 적절 진정처리건수

<설문 4-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직원 한 사람이 일년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사건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자 수 : 30인(63.8%)

□ 응답 빈도 :

1순위 : 100건 (5인 응답)

2순위 : 20건/ 사건의 사안에 따라 다름(각 3인 응답)

3순위 : 1~3건/ 5~6건/ 10건/ 12건(각 2인 응답)

기타 : 1~2건/ 5건/ 10건 내외/ 10~12건/ 10~15건 / 30건 / 50건 미만
/ 50건 / 70~120건 / 200건 / /위원회 소속 전문가의 가동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임./위원별 보조인력을 충분히 구비하는 경우에는 무한정할 것이라고 봄 /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해야 하는 사건들이 접수될 것이기 때문에 보통 단체에서 맡는 사건보다 시일이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각 1인)

4-5 1년간 인권침해 진정 예상건수

4-5 위원회에 일년간 제기될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은 대략 몇 건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000건 이하
- ② 5,000건 내지 10,000건
- ③ 10,000건 내지 20,000건
- ④ 20,000건 내지 50,000건
- ⑤ 50,000건 이상

<응답>

□ 응답자 수 : 34인(72.3%)

□ 응답 빈도 :

1순위 ② 5,000건 내지 10,000건 (10인 응답)

2순위 ⑤ 50,000건 이상 (9인 응답)

3순위 ① 5,000건 이하 (7인 응답)

4순위 ③ 10,000건 내지 20,000건/ ④ 20,000건 내지 50,000건(각 4인 응답)

4-6 1년간 차별행위 진정 예상건수

<설문4-6> 위원회에 일년간 제기될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대략 몇 건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000건 이하
- ② 5,000건 내지 10,000건
- ③ 10,000건 내지 20,000건
- ④ 20,000건 내지 50,000건
- ⑤ 50,000건 이상

<응답>

응답자 수 : 33인(70.2%)

응답 빈도 :

1순위 : ① 5,000건 이하/ ⑤ 50,000건 이상(각 9인 응답)

2순위 : ② 5,000건 내지 10,000건 (6인 응답)

3순위 : ④ 20,000건 내지 50,000건 (5인 응답)

4순위 : ③ 10,000건 내지 20,000건 (4인 응답)

4-7 진정처리 소요기간

<설문 4-7> 위원회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걸리는 적절한 기간의 최대한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① 3개월 이내
- ②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③ 6개월 이상 9개월 이내
- ④ 9개월 이상 1년 이내
- ⑤ 1년 이상 1년 6월 이내

<응답>

응답자 수 : 36인(76.6%)

응답빈도

1순위 : ① 3개월 이내 / ②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각 16인 응답)

2순위 : ③ 6개월 이상 9개월 이내 / ④ 9개월 이상 1년 이내(각 2인 응답)

기타 : 해결이 될 때 까지

4-8 민주적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설문4-8> 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인권의 원칙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과 운영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자 수 : 32인(68.1%)

응답 빈도

1순위 : 국가기관 · 정치권으로부터 인사, 예산 등 운영의 독립성 · 자율성(11)

2순위 : 정보공개등을 통한 투명성과 신뢰(5)

3순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인권전문가 · 활동기의 참여(각 4)

4순위: 공정한 인사 / 조사관의 독립성충분한 조사권한

개별응답의견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현장의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조 필요.

④(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의 완전한 독립, 위원회의 위원장과 조사원과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⑤(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박신용철 조직교육부장)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 민간인권 위원에 대한 개방적 조직구성, 정치권으로부터의 자율성, 인권위원들에 대한 면책 특권

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 위원회 구조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행정적 장치 필요

⑦(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민태호 사무차장)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같은 투명성 확보와 접근성 최대화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첫째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신뢰의 확보이며, 둘째는 투명성·공정성에 바탕한 민주성의 확보임.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공정한 인사, 도덕적 윤리 의무화, 충분한 봉급과 독립적 조사권 부여, 처분결과에 대한 투명성.

⑪(고양시민회 신기철 사무국장) 조직의 통합력

⑫(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윤법달 부장) 투명함 처리절차와 결과에 대한 사실적 공개등...맑음..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법적 독립성

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철호 대외협력실장/정송기 교권법규국장(공동작성)) 조사 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⑮(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이 될 수 있도록, 내부의 운영 상 민주성이 필요.

⑯(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 평화의 집 김주철 소장)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운영규정과 인권회복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는지 ?

⑰(민중의료연합 박균배)로비에서 벗어나야 함

⑱(김상진기념사업회 국승용 사무국장)인권신장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인재들로 위원회를 구성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성-인권침해 민원 대상 국가기구로부터- 보장

인권운동 민간단체의 참여 경로 보장

- ㉑(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회의록 작성 및 공개
- ㉒(나와우리 김현아 대표) 민주적 합의 과정, 실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조직
- ㉓(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송지혜 간사) 약속을 잘 지키자
- ㉔(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조만희 간사) 신뢰, 정직, 무차별
- ㉕(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민형사적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칙으로 하여 지킬 것
- ㉖(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정부로부터 재정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구성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안정성,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 등
- ㉗(남북나눔운동 김경민 교육국장) 공정, 정의
- ㉘(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김삼열 회장) 중립적인 자세
- ㉙(민가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이상희 변호사) 독립성
- ㉚(민가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오민) 엄정사고 진보적사고 독립성
- ㉛(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감학묵 간사) 공개성, 투명성
- ㉜(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 위원구성이 가장 중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여야 함. 활동 가능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 ㉝(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정미정 사무처장) 직원의 서비스 봉사정신/ 민원인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릴 것
- ㉞(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준석 간사) 관료적 관행의 배제-실무에서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의지와 열의가 있는 민간단체활동가들의 채용
- ㉟(동아일보 정현상 기자) 철저한 공개원칙
- (47)(한국YMCA전국연맹 김기현 부장) 중심의결구조에 인권운동가 참여

4-9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업무의 적절수행을 위한 직원수

< 설문4-9> 위원회가 법에 정해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조정 등 구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략 어느 정도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참고사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80명, 공정거래위원회 402명, 노동위원회 196명)

- ① 100명 이하
- ② 100명 내지 200명
- ③ 200명 내지 300명
- ④ 300명 내지 400명
- ⑤ 400명 내지 500명
- ⑥ 500명 이상

<응답>

응답자 수 : 37인(78.7%)

응답 빈도

1순위 ② 100명 내지 200명 (10인 응답)

2순위 ③ 200명 내지 300명 / ⑥ 500명 이상 (각 8인 응답)

3순위 ⑤ 400명 내지 500명 (5인 응답)

4순위 ④ 300명 내지 400명 (3인 응답)

5순위 ① 100명 이하 (2인 응답)

기타 : 직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중요한 것은 사무직원이 아니라,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인력의 수입. 최소한 위원 1인당 1-3명정도의 박사급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팀장으로 하여 약 5명 정도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여야 함.

4-10 법제, 정책과 관행의 조사·개선기능 및 인권교육기능의 적절수행을 위한 직원 수

< 설문4-10> 위원회에 법에 정해진 대로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여 개선하는 기능 및 인권교육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참고사항: 보건사회연구원 약 170명, 한국여성개발원 92명, 통일교육원 62명)

- ① 100명 이하
- ② 100명 내지 200명
- ③ 200명 내지 300명
- ④ 300명 내지 400명
- ⑤ 400명 내지 500명

<응답>

응답자 수 : 35인(74.5%)

응답 빈도

1순위 ① 100명 이하 (15인 응답)

2순위 ② 100명 내지 200명 / ③ 200명 내지 300명 (각 7인 응답)

3순위 ⑤ 400명 내지 500명 (3인 응답)

4순위 ④ 300명 내지 400명 (2인 응답)

기타 (이를 전문인력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 같은 데, 인권위원회는 연구·홍보 기관이 아님. 연구·홍보의 업무는 외부의 아웃소싱으로 처리해도 충분함.)

4-11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진정처리 및 구제업무의 적절수행을 위한 직원수

< 설문4-11> 2001.8.현재, 구금시설(교도소, 구치소, 경찰청 유치장, 군 교도소 등)의 수는 414개(수용인원 148,000명으로 추산)이고, 2001.6.30.현재, 보건복지부가 정한 다수인보호시설의 수는 890개입니다. 이러한 규모를 감안할 때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진정 처리 및 구제 등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의 숫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35인(74.5%)

응답 빈도

1순위 200명 (7인 응답)

2순위 100명 (3인 응답)

3순위 100여명 / 300명 / 500명 / 1,000명 이상 (2인 응답)

기타 10명/ 16명 / 120명/ 100~200명 / 120명 / 200여명 이하/ 200여명 / 300명 이상 / 600명 / 1000명/ 1000~2000명 / 1,300명 / 3,000명 / 최대한 많은 수 배정 /인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건당 1-3명: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직원(전문가)과 외부에서 위촉하는 조사위원 3-5인 정도로 구성하면 될 것임.)

4-12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고려사항

< 설문 4-12>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수 : 28인(59.6%)

응답 빈도

1순위 : 시민인권단체와의 협력 / 인권활동가·전문가의 참여(각 4)

2순위 : 지방조직의 설치(2)

개별응답의견

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당사자/피해자 중심의 관점, 비밀보장의 원칙, 당사자 자기결정권 중시 등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운영위원 및 직원 속에 여성과 장애인의 비율을 높여 줄 것

④(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의 참여와 자문이 있어야 함.

⑤(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박신용철 조직교육부장) 민간단체들과의 상설적 정책협의 기구

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시민 단체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설문의 내용으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운영을 여러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한 국가행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행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자못 실망스럽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낸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관료화하겠다는 발상이 말입니다. 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의 미래상을 그려나가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에 따른 조직과 운영을 구상해보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의무감에 위의 설문에 답하면서도 대부분의 설문에 역겹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괜히 국가예산만 축내지는 않겠지요?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 확보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위원회 내부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방향이나 향후 일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애초 법안에 있던 지역에 관한 규정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아는 데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것처럼 인권위가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지역에도 살치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문제를 가지고 먼 서울로 무조건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인권위답게 국가인권위는 전국 어디서든 국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⑰(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 전문성과 인권활동에 대한 실천성을 겸비한 분들로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⑱(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 평화의 집 김주철 소장)조직과 운영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처음시작시 많은 인원이 필요하나 어느

정착되면 인원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다.

㉔(김상진기념사업회 국승용 사무국장)위원회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야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고, 부당한 간섭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할 힘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됨

㉕(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와 관련하여

가. 한국이 가입했거나 가입할 국제인권조약의 해석 및 국내 전파를 담당할 부서

나.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을 실행하고 그 실태를 조사할 부서

다.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기구와의 협조를 얻어내는 대외협력문제를 담당할 부서

라. 인권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기구 및 NGO와의 정보교류 및 협조를 이끌어 내는 부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㉖(인권정보센터 소장,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한상범)인권위법 18조 규칙제정권이 발동하게 되는 것은 인권위 운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규칙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인권법 및 동 시행령을 보완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예상한 규칙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여선 기대에 못미칠 것입니다.

㉗(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장,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해성) 1) 위원회 이외에 특정분야 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2) 전문위원 또는 조사위원의 역할 및 활동내용 명시

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인권위는 인권단체등 인권보호에 앞장서 왔던 시민단체의 성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국가 주도의 형식적인 인권위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㉙(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 조직이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홍보와 교육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㉚(나와우리 김현아 대표) 북구(스칸디나비아)의 인권법과 남아공의 진실위원회 등 외국의 선진사례에서 모범을 찾아보도록 노력한다.

㉛(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송지혜 간사) 제발 말로만 끝내지 마세요.

㉜(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조만희 간사)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 확보. 진정

시 차별 없이.

㉓(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부정부패의 만연화로 법대로 처리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 할 것임.

㉔(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지방조직 구성 및 비정부기구와의 긴밀한 관계, 독립.전문적 업무처리, 실효성 있는 처리를 위한 권한

㉕(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김삼열 회장) 사무실의 위치도 중요하다

㉖(민가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이상희 변호사) NGO와 협력

㉗(민가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오민) 인권활동가를 많이 활용했으면

㉘(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정미정 사무처장)불필요한 인력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

㉙(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해결학 박사과장 강영진) 위원회 조사결과 및 그 처리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측간에 이견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그 효과적인 처리방법 및 절차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을 듯

(47)(한국YMCA전국연맹 김기현 부장) 경우에 따라서 기존 국가조직과의 마찰, 갈등이 예상되므로 사무처 구성시 독립조직 인원(인권운동가, 전문가, 젊은 연구자) 구성이 중요.

5.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5.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 11. 25.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5-1, 2 설립초기의 우선활동

<설문5-1> 아래 내용 중 위원회가 설립초기에 가장 우선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순서대로 5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구금·보호시설 인권실태 조사
- ② 군대내 인권실태 조사
- ③ 차별행위 실태조사
- ④ 법집행공직자 인권교육
- ⑤ 학교내 인권실태 조사 및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 ⑥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 ⑦ 새로 제정되는 법령에 대한 조사와 연구
- ⑧ 인권침해의 기준 및 예방을 위한 일반지침의 제정
- ⑨ 빈곤층의 생활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
- ⑩ 각 분야별 인권지수의 개발
- ⑪ 인권상황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및 국가기관과의 협조체제 수립
- ⑫ 외국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⑬ 국내외 인권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⑭ 재소자, 외국인 등 특수집단에 대한 인권교육
- ⑮ 국민 기초생활 보장실태 조사
-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 : 빈도>

- ① 구금·보호시설 인권실태 조사(100)
- ⑪ 인권상황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및 국가기관과의 협조체제 수립(69)
- ⑥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65)
- ② 군대내 인권실태 조사(57)
- ⑧ 인권침해의 기준 및 예방을 위한 일반지침의 제정(45)

- ③ 차별행위 실태조사 (42)
- ⑨ 빈곤층의 생활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40)
- ⑰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33)
- ④ 법집행공직자 인권교육 (28)
- ⑫ 외국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27)
- ⑩ 각 분야별 인권지수의 개발(14)
- ⑮ 국민 기초생활 보장실태 조사(12)
- ⑤ 학교내 인권실태 조사 및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18)
- ⑬ 국내외 인권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제공(4)
- ⑦ 새로 제정되는 법령에 대한 조사와 연구(3)
- ⑭ 재소자, 외국인 등 특수집단에 대한 인권교육/ ⑯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1)

<설문 5-2> 위 내용 이외 위원회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인권현안이나 해야 할 활동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 응답자 수 : 29인(61.7%)
- 개별응답의견

- 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공무원 및 시민교육,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장애인의 인권, 특히 여성장애인의 성폭력.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조사 및 대책활동이 시급하다고 봄
- ④(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 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 인권단체 지원

⑦(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민태호 사무차장) 권력으로부터 비호받는 사용자들의 용역깡패를 통한 노동조합활동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서민고충 해결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과거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권위있는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엄중한 자기반성의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선 사법남용죄에 해당하는 검찰, 법원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지요.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정부기관이 법에 의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인권을 박탈당한 피해자가 많음.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테러라 할 수 있는 이러한 피해는 과거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는 탐관오리들의 부정보다 훨씬 극심하고 검찰이 조사를 기피해 집단 이기화되어 있으며, 합법을 가장하고 있음. 그 피해자는 공권력이라는 불가항력에 의해 재산권을 모두 잃거나, 이해할 수 없는 처분으로('혹'을 '백'이라 하는) 정신적 피해도 매우 극심함. 더구나 이러한 피해는 국가에 청원해도 무성의하고 편협적인 처리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그러한 범죄를 모방하는 등 윤리와 도덕성과 정의감, 애국심이 말살되고 있음.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됨(IMF등).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발생하는 난제로서 이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피해자들의 기본권도 보장해 주는 활동이 절실함. 실제 재산을 빼기 위해 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시키고 그 사이에 재산을 모두 빼어버린 사례가 많음.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위에 열거된 것이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음

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광배희 소장)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인권 현안

- 1) 여성 차별과 불평등을 규정한 민법 등 관련법(예컨대 호주제)의 개정권고
- 2)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 협의
- 3) 여군에 대한 성차별 및 성희롱에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 4)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실태조사 등
- 5) 수용시설내의 낙태 및 불임 강요 행위 실태조사

6) 의문사 진상 규명

7) 고위공직자의 여성 의식 재고를 위한 교육 실시

8) 인권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차별개선 및 인식전환교육 실시(관련 민간 단체에 교육 위탁)

9) 매회년도 중점 인권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과제 선정

10) 인권관련 법률제정 개정에 관한 준입법권 도입 및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를 위한 시정명령권, 계좌추적권, 소환조사권 갖도록 함

11) 장기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수행

⑰(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 중국 내 북한식량난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와 구제 노력도 필요함

⑱(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 평화의 집 김주철 소장) 인권에 관한 학습과 홍보가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져한다.

⑲(민중의료연합 박균배)여성인권확보에 대한 기준 마련

㉑(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인권 개선 목표치 달성과 그 개선에 대한 백서 발간 사업, 인권 교과서 내지 소책자 저능 학생들에게 배포 교육

㉒(한국정치연구회 오현철 연구위원)인권위원회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몽과 예방조치의 제도화 그리고 과거의 침해사례에 대한 반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인권침해사례 백서발간 : 따라서 초기활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인권보장과 신장을 위한 제도정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가지 목적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만 만들라는 뜻은 아니고, 백서발간이 중요한 초기 작업중의 하라나는 의미입니다.

㉓(천주교 수원교구 안양 전·진·상복지관/이주·여성인권연대 이금연 세실리아 관장)제32조 접수한 진정이 각하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은 사실에 있어서 기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하기 위한 경우로서 재심의 충족요건은 기판결까지의 위증이나 무고에 대한 검찰의 기소조건입니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기소권독점으로 인하여 기관결이 도출되기까지 수사 과정에 있어서 비록 검찰이 형법 제123조 내지 제 125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음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기관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그 수사를 기관결을 원용하여 기피하고 있는 범현실인데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그 수사를 기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오인을 할 경우를 예측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현행법으로 수사과정이 검찰의 처분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고등검찰에서 그 이의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검찰 관례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23조 내지 형법125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검찰 자체일 경우,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거나 기관결존중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그 진정 대상이 검찰일 경우 위원회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진정은 당연 접수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상 위원회가 위와 같은 경우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재정신청 및 항고의 대상이 검찰일 경우, 위원회는 사건의 진전에 상관없이 그 진정을 접수하여서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유지되는 한, 위원회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로서 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도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㉕(인권정보센터 소장,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한상범) 1)장기 사업으로 일정 시한을 정하여 한국 인권문제의 전반적 개관과 인권문제로서 시정되어야 할 과제나 기타 사항 등에 대한 백서(가칭)를 발간하는 일. 2)당장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서 반드시 인권위의 주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에 대한 정리와 그에 대한 자체 조사착수. 3) 인권법이 정하는 평상 업무 이외에 인권위를 일반인이 활용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와 사무처리 요령 및 홍보활동.

㉖(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장,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해성) 1)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차별 보호소 수용실태 등 2)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국제법 협약 위반이나 미이행 사항들. 3) 중국동포(호적가진 이들)의 국적 취득에 관한 내용 4) 중국동포 중 혼인으로 입국한 이들의 자녀 초청포기각서 등 5) 경찰, 노동부 등 외국인 피해 신고시 불법 체류자 라는 이유로 피해 복구 이전에 먼저 추방시키는 악습.

㉗(한국노동사회연구소) 경찰서, 국정원 등의 가혹행위나 인권유린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 및 구금 등의 조치를 취할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함.

㉘(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 아직 여러 정부 단위나 단체, 수용시설 등에서 국가인권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알리는 일이 먼저일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군 교도소 포함) 등의 구금조건이 유엔의 기준에 합치되고 있는가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㉙(나와우리 김현아 대표) 외국인의 난민신청 및 인정 문제, 자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민간인 학살 문제 등

㉚(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송지혜 간사) 인권교육

㉛(열린사회시민연합 이종철 간사)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 인권문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㉜(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법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건은 재조사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진정사건을 명시해야 함

㉝(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수사가 종결된 사안에 대한 조사 보장

㉞(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묵 간사)인권교육의 학교교과 반영 노력

㉟(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일선 공무원의 인권의식 교육, 시민대상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개선을 위한 활동, 사회관행으로 자행되는 일상속의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홍보 및 문제제기, 미디어에 의한 인권침해상황 모니터하고 고발하기 등등

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준석 간사)매년 분야별 인권지표나 보고서를 발행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㊲(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해결학 박사과정 강영진)고용주의 자의적 기준(용모 종교 나이 등)에 의한 신입사원 채용 등 직장내 차별이나 기본적 인권침해 관행을 조사하고 이의 금지를 제도화하는 것)

6. 설립준비난항으로 법정설립일(2001.11.25)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지 못할 상황에 관한 의견

< 설문 6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인권위원의 임명과 부속법령의 제정, 직원의 임명 등 준비를 거쳐 11월 25일에 활동을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인권위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11월 25일까지 설립준비작업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떻게 해서라도 11월 25일에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 ② 인권위원이 임명될 후 정상적인 준비작업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활동을 시작하되 11월 25일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 ③ 위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 응답 >

응답자 수 : 40인(85.1%)

1순위 : ② 인권위원이 임명될 후 정상적인 준비작업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활동을 시작하되 11월 25일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27인 응답)

2순위 : ① 어떻게 해서라도 11월 25일에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9인 응답)

위 외 다른 의견 :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재의 기획단으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이 경우에는 자폭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그동안 민간에서 진행해온 인권운동단체들의 의견이나 고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국가인권위가 국가수사기관의 법집행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러한 일을 해온 인권단체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본다.

⑭(민중의료연합 박근배) 인권위원 선임에 있어서 정부, 정당, 국가기관에서 할당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시민,사회,노동,여성 단체에서 그간 인권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⑳(김상진기념사업회 국승용 사무국장)인권활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통령의

결단이 중요

7.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논란에 대한 대응

< 설문 7 > 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의 최소한의 조직과 정원으로 일단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 ② 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정원을 확보한 다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위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응답>

응답자 수 : 36인(76.6%)

1순위 ② 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정원을 확보한 다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4명 응답)

2순위 ①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의 최소한의 조직과 정원으로 일단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7명 응답).

위 외 다른 의견

○ 특히 정치적인 포석 때문에 어느 한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되고 각 지역별로 균등한 발탁이 바람직 함

○ 가급적 공무원들은 배제되었으면 한다. 이것은 기간 동안 여러 경우(의문사진상 규명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등)에 있어 공무원들이 가지는 보수성이 확인 된 바가 있다.

⑧(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 평화의 집 김주철 소장)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원은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구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인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하는

일 중 못마땅한 부분 어느부서 어영부영 어느부서 밤늦게까지 언제까지 이러려는 지.

㉔(김상진기념사업회 국승용 사무국장)제도나 시스템에서는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정원을 확보해야 하나,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활동 시작

㉕(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언론을 통하여 사건을 접수하여 공개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것 (실태파악이 중요함)

8.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

<설문 8> 위원회와 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으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응답자 수 : 27인(57.4%)

응답빈도

1순위 : 시민인권단체와의 상시 협의, 연대회의의 정례화, 의견수렴(12)

2순위 : 인권침해조사·구제와 인권교육 등 시민단체와의 공동대응(6)

3순위 : 정보공개와 공유(5)

4순위 : 인권활동가의 참여(4)

개별응답자의 의견

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공동조사, 시민단체 음부즈만 제도, 정보공개 등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 및 현장 의견을 자주, 원활히 할 것.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활동은 시민단체에 사업비를 제공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시민단체의 전문성 활용필요)

③(열린사회 서대문, 마포시민회 박운기 정책기획부장) 정보공유

④(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를 해야 함.

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 인권단체의 자문기구화 및 공식 간담회나 포럼 등의 공식적인 대화창구 마련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 투명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시민단체와 가능하면 많은 공동 프로젝트 수행, 그리고 정부기구와 시민단체와의 중간매개체 역할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위원회와 시민사회의 협력 방안을 말하기 전에 우선, 기획단과 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닐까요? 설문의 내용이나 방식을 미루어보아 기획단 역시 벌써부터 관료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설문의 내용은 설문의 방식이 아니라, 간담회나 세미나,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설문은 그것을 위한 사전자료수집의 의미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현정부나 정치권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위 6,7항에서 제시한 것처럼 11월 25일까지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기획단으로서는 정치권만 목매어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의지를 수렴하고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문제는 어느 누구의 선각자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민과 국민 모두의 공감대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쟁취되었고 그들의 의지로 그 빛이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단이 설치된 지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기획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었을 때 보이지 않게 환호를 질렀던 사람들-공대위나 인권연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호의와 지혜가 바로 인권위원회를 떠받치는 힘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획단이 관료적 발상에서부터 자유로울 것을 요구합니다. 인권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기획단은 그 작업만 중개할 뿐이다라는 사고가 절실한 때입니다. 인권위원회를 만들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인권운동이며 교육이며 홍보입니다. 인권위원회는 11월 25일 발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법제정운동이 있

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리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획단만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량들을 가동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합니다.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시민사회단체의 난립으로 색깔이 불분명한 단체도 많지만, 대체로 3년 이상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단체는 나름대로의 신념과 경험을 갖고 있음(천주교 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이러한 단체는 형편이 어렵지만 순수하게 인권개선에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음. 어느 한 단체가 전체 공익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방향으로 활동하는 단체 중 활동방법상 서로 대립되는 단체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추진함으로써 화합과 협동을 이룰 수 있을 것임.

⑪(고양시민회 신기철 사무국장) 회원단체 등 온라인 상의 상시적인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할 수 있는 사안별 회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시적인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지역단위 활동단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지역단체들이 민생과 민권에 관한 구체적 정보에 항상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위원회는 국가기관이다. 민간 단체와는 협력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하겠다는 조직인 만큼 민간사회단체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사안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대응할 수 있으면 한다.

⑮(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철호 대외협력실장/정송기 교권법규국장(공동작성)) 정례협의회

⑰(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 정기적인 만남과 의견교환의 장이 필요하다

⑱(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 평화의 집 김주철 소장) 인권이란 인권단체라고 명칭이 붙은 곳이 아니다. 실제로 인권과 차별대우에 대응하여 일하는 단체나 상담소의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격의없게 하는데 자기들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수용, 취합하여 필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말로만 하지요. 매번

⑲(민중의료연합 박균배) 위원회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⑳(김상진기념사업회 국승용 사무국장)인권운동사랑방이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엠네스티 등 인권운동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이들 인권운동단체와 상시적인 대화 채널이 있어야 함.
- ㉑(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시민사회 단체에서 인권 침해 제보 시 신속한 수사와 해결이 필요
- ㉒(나와우리 김현아 대표) 인권위의 역할 및 앞으로의 사업진행에 있어 전문단체와의 사안별 연대도 중요한 것 같다.
- ㉓(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송지혜 간사)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시길.....
- ㉔(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조만희 간사) 서로 연계
- ㉕(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언론과 방송(TV)을 통하여 토론회를 자주 하실 것
- ㉖(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1)현장의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간담회, 포럼의 정례화 2)인권침해사건에 대한 핫라인(전담협력창구) 개설 및 공동대응
- ㉗(남북나눔운동 김경민 교육국장) 당연히 서로 연대해야 한다.
- ㉘(민가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오민) 명실공히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있는 위원회가 되길
- 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묵 간사) 공공기관 또는 시설의 인권 실태 공동 조사단 운영
- ㉚(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각 분야의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성인,청소년,유아등 조건에 상관없이)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할 수 있을 것.
- ㉛(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준석 간사) 1. 민간에서의 인력확충, 2. 정기적인 간담회 (최소 3개월 또는 6개월에 1회), 3. 보고서의 작성시 민간의 참여
- ㉜(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해결학 박사과정 강영진)우선, 국가기구로서의 자기 위상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시민사회에 대한 최선의 협력임. 국가기구로서 뿌리내리기도 전에 처음부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9. 기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제안

<설문9> 그밖에 기획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응답자 수 : 27인(57.4%)

개별응답자의 의견 :

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충분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연구/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

②(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문제 등에 대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이 꼭 마련되어지기 바랍니다.

④(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피해고발 전화와 상담 창구 개설

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여러가지로 어려운상황이고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부디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⑦(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민태호 사무차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다만 돈으로 권력을 사는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인권을 말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조정강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였으면 합니다. 노동자가 1200만이라는데 곱하기 3하면 전체국민숫자 아닙니까? 노동현장 특히 중소기업장에서 벌어지는 사용자들의 인권탄압은 어디에서도 귀기울이는 곳이 없습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 속보란에 보면 동영상이나 글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⑧(한국인권재단 김태호) 많은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유린을 해결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⑨(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아직까지 우리 정치현실을 볼 때 인권위원회 그리고 기획단은 평화가 아니라 전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 거대한 전선을 바라보면서 훌훌단신으로 전투를 개시할 때 그 병사는 무엇을

준비하고자 할까요?

⑩(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인권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임. 특히, 1988' 부동산 투기바람 이후 증폭된 이기주의, 민주화 바람으로 구 체제의 구조가 무너지고 총체적 부정부패가 극성을 부려 거품경제로 인한 경제몰락을 경험한 바 있음. 현재 서서히 변화되고 있으나, 의식구조 개혁의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인권위원회 업무 및 인원배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⑪(고양시민회 신기철 사무국장) 응답자의 짧은 식견일수도 있겠지만 설문문의 내용이 상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많은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의 활동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⑬(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앞서 말씀 드렸지만 시작 단계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점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인권위 설치문제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하는 조직이 국민과 괴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변호사 사무실도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문제를 자유롭게 상담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곁에 있는 인권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배희 소장) 그 밖의 기획단에 제안할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휘장, 상징마크, 캐치프레이즈의 공모·선정

* 국가인권위 활동 사항을 인터넷 개시, 여론 수렴

⑰(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 인권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시고, 행정관료들의 타성과 관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⑱(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 평화의 집 김주철 소장)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가장 우선이다. 이일에 담당자에 대한 인권과 상담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매우 곤란하자 인권침해나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매우 민감하고 어떤 경우는 편파적이며 냉소적이기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담을 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안그러면 엉뚱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같은 실

무자들이 매우 잘알고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 인권 침해 신고센터 스티커를 만들어 수용시설이나 곳곳에 부착하여 신속한 신고 체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한국정치연구회 오현철 연구위원) 인권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알 수 없어서 업무제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두가지는 반드시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수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 : 장애인·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의 복지(이들의 복지수준이야말로 국가인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착취, 군대와 경찰조직내에서의 가혹행위, 매매춘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등. 이러한 사안을 다루는 정부부처가 별도로 활동하고있을 것입니다만, 각각의 부처의 활동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배려가 없다면 인권위원회가 개입해야할 것입니다. 일반 부처의 행정조치로써는 최소한의 권리확보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 일반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 : 부당한 노동착취 시정. 노동착취를 경제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착취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권을 훼손하는 인권침해행위입니다. 노동부의 조사와 조치와는 별개로 인권차원에서의 노동착취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권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와 같이 정치·행정권력이나 개인·집단을 막론하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시행령 제정 및 조직기구 구성과정 등을 공개적으로 하여, 공론에 의해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 나아가야 한다.

보호시설에 수용된 수용자가 법원의 행정착오(미통일수착오)로 인하여 그 형기를 도래하여 수용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정기적인 법원의 행정감사등을 위원회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천주교 수원교구 안양 전·진·상복지관/이주·여성인권연대 이금연 세실리아

관장) 보호시설에 수용된 수용자가 피고인불이익원칙에 따라 3심(상고심)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형기가 길어지는 현실에 대한 조사권을 위원회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보호시설에 수용된 수용자가 검찰 법원에 회신을 요하는 탄원서등을 제출하였을 때 그 회신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인권법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있어 인권위원회는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 특히 여성들, 그 여성들 중 약한자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물론입니다. 억울한 이들의 그 억울함을 풀러내는데 인권위원회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르고도 공정하게 수렴 할 수 있는 열린 조직으로서의 인권위를 기대합니다.

인권위원이 되고자 하는자 무엇 때문에 위원이 되고자 하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그 철학의 밑바탕부터 국민들로부터 신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임명되기를 바라나이다.

㉕(인권정보센터 소장,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한상범) 기획단의 업무로선 한정된 시일과 인원을 가지고선 무리한 부탁이 되어선 안될 것이지만 참고로 제시해 보면, 1)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체제 정비이외에 사무직원에게 대한 연수교육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봄. 2) 관계부처와 업무협조 조정을 위한 채널과 관계 직원의 타부처와의 교류의 제도화 조치 3) 외국의 사례나 업무처리에 관한 관계자료 등 구비 및 참고자료실과 연구조사자료를 구비한 도서관 시설의 설치가 당장 착수해야 할 과제로 봄. 4)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 자료 문헌 등 이미 국내에서 수집가능한 것을 정리하고 외국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정상화시키고 필요하면 시찰 연구 등 인력파견이나 교류도 계획할 것. 응급 필요한 것은 당장 조치할 것.

㉖(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획단이 특정한 정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설적인 인권기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㉗(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 인권위는 위원회의 기능을, 인권단체는

인권단체의 고유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호 협조와 비판이 전제가 되겠지요. 인권위를 설립하고 발족하는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이나 인권운동가들이 서로 다투고 반목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권위가 권위적인 기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㉔(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현재 2000년 8월말까지 발생한 민원건수가 164백만건이므로 이를 줄일려면 엄정한 법집행 밖에는 없으므로 부패한 공무원을 발본색원하여 징계토록 시행령에 규정해야 함.

㉕(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해바라기는 되지 마시고...

㉖(민사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이상희 변호사)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 준비해 주시기

㉗(민가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오민) 인권활동가들의 의견을 주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㉘(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정미정 사무처장) 또 다른 옥상옥이 안되도록 실질적인 활동에 노력바랍니다.

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준석 간사)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히 개인의 진정을 처리하여, 처리건수에 의해 그 공과를 따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이외에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마련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몇 년 하고 없어질 기관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㉚(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해결학 박사과정 강영진)이 설문지 내용들을 보니 기획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악전고투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고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이 응답지에 실어 함께 보냅니다.

IV. 응답자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2.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성혜 사무국장
3. 열린사회 서대문, 마포시민회 박운기 정책기획부장
4.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용호 연구실장
5.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박신용철 조직교육부장
6.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은희 정책기획팀 간사
7.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민태호 사무차장
8. 한국인권재단 김태호
9. 행정개혁시민연합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0.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 연구소장
11. 고양시민회 신기철 사무국장
12. 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윤범달 부장
13. 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광배희 소장
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철호 대외협력실장/ 정송기 교권법규국장 (공동작성)
16.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17. 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
18.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4지구 노동문제상담소.평화의 집 김주철 소장
19. 민중의료연합 박균배
20. 김상진기념사업회 국승용 사무국장
21. 노원시민모임 승정희 사무국장
22. 한국정치연구회 오현철 연구위원
23.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24. 천주교 수원교구 안양 전·진·상복지관 / 이주·여성인권연대 이금연 세실리아
관장
25. 인권정보센터 소장,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한상범

26.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장,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해성
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8.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
29. 나와우리 김현아 대표
30.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송지혜 간사
31.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조만희 간사
32. 열린사회시민연합 이종철 간사
33.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상임대표
34. 위례시민연대 황기룡 사무국장
35.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명철 간사
36. 남북나눔운동 김경민 교육국장
37.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김삼열 회장
38. 민가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이상희 변호사
39. 민가협'교도소를 걱정하는 모임' 오민
40.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묵 간사
41.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
42.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정미정 사무처장
4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준석 간사
44. 동아일보 정현상 기자
45. 동아일보 신동아 육성철 기자
46. 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해결학 박사과정 강영진
47. 한국YMCA전국연맹 김기현 부장

① 설문에 응답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힌 단체

1. 여성과 인권연구회 민가영 간사
2. 건치 이인문 간사

3. 여성개발원
4. 국제민주연대 최재훈
5.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창수

● 메일은 왔지만 첨부파일이 없거나 미작성파일로 보내온 단체

1. 생태보전시민모임(9/21)
2.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공동작성(9/25)

● 마지막 페이지만 보내 설문집계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

1. 군포시민모임 김영미 대표